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.

발 의 자 : 김선교·김상훈·이현승
윤상현·구자근·최보운
김승수·박준태·김소희
박충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통지해야 하고, 통지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.

그런데 현행 법령은 수사 종료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니,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보호·지원 및 개입을 제때 받지 못하고, 수사 종료 시점에는 이미 사건으로부터 심리적 거리감, 불신이 형성되어 원활한 피해자 보호·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됨.

따라서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사건의 통지를 사건 접수 후 수사

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앞당겨, 전문 지원기관을 조기에 연계하여 재피해를 예방하고,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의 지원기관 연계를 위한 통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, 통지 시점을 ‘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 통지’로 개정하여,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 중 “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”를 “사건수사를 개시 후 즉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에 대한 조치 등) ① (생 략)	제38조(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에 대한 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 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을 발견 한 경우 신속하게 <u>사건을 수사</u> <u>한 후 지체 없이</u> 성평등가족부 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 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지원센 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 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 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사건수사를</u> <u>개시 후 즉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